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중대재해 예방에 「위험성평가」가 필수입니다!



1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



1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성평가 실시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2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서는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 게시판 → 공지사항

3 위험성평가의 방법은?

사업주 주도 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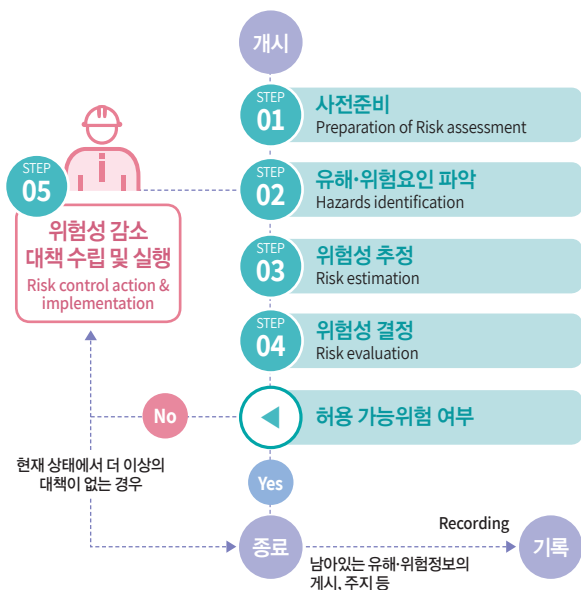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근로자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참여

2 위험성평가의 추진절차



- STEP 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STEP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 STEP 3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 상시근로자수 20명미만(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생략 가능
- STEP 4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STEP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3 위험성평가의 시기, 결과기록 및 보존



1 위험성평가의 시기는?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수시평가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2 기록 및 보존 방법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4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kras.kosha.or.kr)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조수단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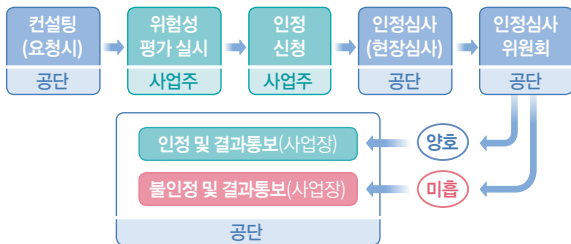


5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제도



1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사업 소개

구분	위험성평가 컨설팅	위험성평가 인정
소개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컨설팅 해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요건에 충족한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업종(건설업 제외) :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 건설업종 :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 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 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업종(건설업 제외)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 건설업종 : 총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에서 신청 (사업장회원 회원가입 필요) • 오프라인 :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신청서 또는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제출 ※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사업장 당 매년 2회 지원 	



2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 산재보험요율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 KOSHA-MS 컨설팅비용 우선 지원(50명 미만) 및 실태심사비 면제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60억→100억)

6 위험성평가 교육 지원



“위험성평가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 지원신청서”를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공단 광역 교육센터에서 실시(무료)

-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터넷 원격 방식의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
- ※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 인터넷교육센터(<https://www.safetyedu.net>)에서 신청가능

● 평가담당자 교육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민간교육기관에서 실시(유료)

-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에서 신청 가능

1 민간교육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 서초구 효령로 179 혜산빌딩	02-2046-0512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빌딩	02-6275-8680
(사)안전보건진흥원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52(독산동) 독산빌딩 3층	02-804-7900
(사)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38 이현빌딩 301호	02-869-0390
(사)한국안전기술협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 9층 (원시동, 타원타크라 II 지식산업센터)	031-480-8504
(주)경남안전기술단	경남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5, 3층	055-273-7012
(주)나야넷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804호)	02-6494-2010
(주)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08	053-586-9300
(주)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로 19-1	043-212-4611
(주)대한산업안전본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74(청양빌딩 2층)	042-825-6506~7
(주)대한안전기술연구원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95 공전타워 602호	031-411-8410
(주)에이스직업전문학교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92	02-702-4020
(주)울원예듀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1403호	1688-2447
(주)한국안전기술지원단	부산 강서구 대저로 294 한국안전기술지원단빌딩	1544-2264
㈜탑스윌교육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98 광성프라자 501호	031-968-0037
산업훈련원주식회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60, 301 (고잔동, 원원프라자)	070-7006-8750
제일건설안전기술(주)	서울 구로구 오류동 77-19 동선빌딩3층	02-2612-5530
주식회사 한국안전기술원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15길 25 (호림동) 3층	053-523-8700
주식회사산업안전기술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252 (이곡동) 3층 (246번지 2층)	053-986-2552
한국산업안전컨설팅(주)	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로 118 (상도동 2,3층)	054-253-3632
한국표준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9길 5 (삼성동, DT센터)	02-2624-0338

산업안전보건법과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의무주체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장 적용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명 이상 적용)	5명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명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
재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의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의 안전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80개 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④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처벌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연락처



일선기관명	관할구역	위험성평가지원 업무 담당자	위험성평가교육 업무 담당자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 및 동작구	02-6711-2894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중랑구 및 노원구	02-3783-8332	서울광역본부 02-6711-2913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양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033-815-1059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033-820-2531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504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34	부산광역본부 051-520-0554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055-269-0561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055-371-7515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062-949-8743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063-240-8545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부안군 및 고창군	063-460-3636	광주광역본부 062-949-8718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061-288-8753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061-689-4943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16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66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고양시·파주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031-828-1953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032-680-6559	인천광역본부 032-510-0645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오산시·안성시	031-259-7123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031-481-7515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031-785-3327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군위군	053-609-0555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고령군 및 성주군	053-650-6836	대구광역본부 053-609-0574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 및 청송군	054-478-8017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054-271-2046	
대전세종 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042-620-5653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043-230-7151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74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보령시·서산시 및 예산군·홍성군·서천군·부여군·청양군·태안군	041-570-3441	